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
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6. 19.

강준현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6. 2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17회 국회(임사회)

－ 제1차 정무위원회 (2024. 8. 26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

－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(2024. 8. 28.)

상정, 의결(수정가결)

－ 제2차 정무위원회 (2024. 8. 28.),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
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강준현의원)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‘가상자산사업자’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최 병 권)

- ☐ 개정안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제1항).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,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☐ 이와 같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·행정처·관계부처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

– 3 –

관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실관련자와 그 이해관계인²⁾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.

□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³⁾를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⁴⁾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임.

□ 개정안에 따를 경우, 부실관련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,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공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거래소 관리계좌의 잔고, 가상자산 보유 및 이전 내역 등의 파악이 가능해져,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및 회수 업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.

□ 다만, 개정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해 보임.

-
- 2) 부실관련자의 배우자,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·비속,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,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(轉得者),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
- 3)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가상자산사업자”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- 가. 가상자산을 매도·매수(이하 “매매”라 한다)하는 행위
- 나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- 다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라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- 마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·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- 4)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가상자산”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- 가. 화폐·채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- 나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- 라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
- 마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
- 바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- 사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(이하 “한국은행”이라 한다)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
- 아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- 첫째, 개정안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요구대상에 추가하고 있는데, 2023년 7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으므로, 개정안의 인용 법률을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둘째, 개정안에 따르면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’ 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,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’이라는 문구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만 수식하는지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까지 수식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

현행법 시행령은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’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⁵⁾ 새로 추가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, 자구의 위치를 변경해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’이라는 문구의 수식을 받지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5)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5(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)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
2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3. 「어음법」 또는 「수표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※ 「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」(법무부령)에 따라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
5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※ 은행, 한국은행,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,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,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,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, 보험회사, 체신관서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술보증기금,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,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, 신용보증기금, 산림조합·전문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보증재단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,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, 한국주택금융공사,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,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)

< 개정안 자구 수정의견 >

현 행	개정안	자구 수정의견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----- -----.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 ----- ----- -----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준현위원)

- 수정하여 의결함.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

2024년 8월 28일 정무위원장

나.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3년 7월 제정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인용 법률을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하고, 새로 추가될 ‘가상자산사업자’의 자구 위치를 변경하여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’이라는 문구의 수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21조의3제1항).

7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8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10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:

1.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8. 28.

제안자 : 정무위원장

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3년 7월 제정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인용 법률을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하고, 새로 추가될 ‘가상자산사업자’의 자구 위치를 변경하여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’이라는 문구의 수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21조의3제1항).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”를 “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회사의 장이나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그 특정점포에 부실 관련자 또는 이해관 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 는 자료의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제2 1조의4를 적용한다. ② ~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	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개정안 과 같음)
---	--	--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를 “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 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.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